전일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비교표

조항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 (신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28호) (신설)
제5조 3호(추가)		3. 학생의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추가)
제2장 (신설)		**제2장 학생의 권리와 책임(신설)** **제6조(학생의 권리)** 모든 학생은「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제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규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학습에 관한 권리 2.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3. 인권 교육을 받을 권리 4.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5.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6. 안전에 대한 권리 7. 휴식을 취할 권리 8. 개성을 실현할 권리 9. 사생활의 자유 10.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11. 정보에 관한 권리 12. 양심·종교의 자유 13. 표현의 자유 14. 자치활동의 권리 15.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16.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17. 복지에 관한 권리 18.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19. 문화활동에 참여할 권리 20. 급식에 대한 권리 21. 건강에 관한 권리 22.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23. 상담과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 24. 그 밖의 보편타당한 권리 **제7조(학생의 책임)** 학생은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이 있다. 1.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할 책임 2. 수업 등 교육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책임 3.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을 책임 4. 교원의 교육활동 및 교육적 권한을 존중할 책임 5. 학교 규칙과 규정을 준수할 책임 6. 학생 간 서로 존중하며 학교폭력을 일으키지 않을 책임 7. 바른말과 글을 쓰고 정보통신 윤리를 준수할 책임 8. 수업 등 교육활동 중에 전자기기 사용 규칙을 지킬 책임 9. 학교 환경을 소중히 하고 학교 내 공공기물을 소중히 다룰 책임 10. 자신과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할 책임 11. 그 밖의 보편타당한 학생의 책임

제8조 3호 4호 호 (수정)	**제6조(대인 관계에서 자세)** ③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④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공손한 언행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⑧ 다른 학생과 교제 시 제삼자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제8조(기본생활)(수정)** 3. 학생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따른다.(수정) 4. 교원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인권우호적 의사소통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수정) 8.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글, 상징, 혐오 표현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수정)
제9조 4호 (수정) 7호 (추가)	**제7조(시설이용 및 환경)** ④ 방과 후, 휴일 등에 있어 학교 시설 이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9조(시설이용 및 환경)** 4. 방과 후, 휴일 등에 있어 학교 시설 이용은 사전에 학교의 장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수정) 7. 학생은 쾌적한 수업과 학급 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추가)
제12조 7호 (추가) 11호 (추가) 12호 (신설) 13호 (신설)	**제10조(학급 및 수업에서 태도)** ⑦ ~ 불가피하게 수면이 필요할 경우 교사의 허락을 받는다.	**제12조(학급 및 수업에서 태도)** 7. ~ 불가피하게 수면이나 휴식이(추가) 필요할 경우 교사의 허락을 받는다. 11. 수업 중 휴대폰과 노트북, 테블리PC, 이어폰 등 불필요한 전자기기를 꺼내놓거나 사용하지 않는다.(추가) 12. 교원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할 경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진다.(신설) 13.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허락 없이 해당 교육활동의 내용에 대한 실시간 송출, 녹화, 녹음 등을 하지 않는다.(신설)

제13조 1호(추가)	**제11조(휴식시간)** ①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한다.	**제13조(휴식시간)** 1.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하며,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들의 휴식시간(식사시간을 포함)을 보장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비례의 원칙에 따라 최소의 범위 내에서 교육활동, 생활지도 등을 할 수 있다.(추가) ○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으로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제한의 최소성을 지키는 것(추가)
제14조 1호 (추가) 가 나 마 자 (추가) 2호 (추가)	**제12조(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①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대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②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타인을 타격해 위해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들 ⑤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제14조** 1. 소지 금지 물품(추가) 가.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대기, 가스총(추가)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나.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너클(추가) 등 타인을 타격해 위해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들 마.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 침해, 혐오 표현(추가)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자. 그밖에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매체물,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 등(추가) 2. 교육활동 중 사용 금지 물품(추가) 가.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이하 “전자기기”라 한다) 나. 과도한 소음 등을 발생시켜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도구 및 장치 등
제15조 6호 (추가)		**제15조(용모와 복장)** 6. 교복.복장.신발.두발에 관련한 세부 사항은 ‘복장 및 두발 착용에 관한 규정(별첨5)’에 따른다.(추가)

제17조 1호 (추가)	**제15조(전자기기 사용)** ① 교육활동 과정(조•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학교행사, 체험활동)에서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교사가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7조(전자기기 사용)** 1. 교육활동 과정(조•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학교행사, 체험활동)에서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적 목적 달성 및 긴급한 상황 대응 등(추가)을 위해 교사가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0조 (신설)		**제20조(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른 학업 및 진로·제6조에 따른 보건 및 안전·제7조에 따른 인성 및 대인관계·제8조에 따른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신설)
제21조 (신설)		**제21조(생활지도의 방식)(신설)**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른 조언·제10조에 따른 상담·제11조에 따른 주의·제12조에 따른 훈육·제13조에 따른 훈계 등의 방식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의적인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와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조치에 관한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별첨1'과 같다. 3. 학교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지도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행동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경우 제32조·제33조·제34조·제36조·제37조·제38조·제39조·제40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22조 4호 (추가)		4.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추가)

제23조 (수정) 1호 (수정)	**제19조(학생교육위원회의 소집 및 기능)** ① 학생교육위원회는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생활교육 담당부장의 제청으로 교감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의결한다.	**제23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소집 및 기능)** 1. 학생교육위원회는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인성인권(수정)부장의 제청으로 교감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의결한다.
제24조 (수정)	**제20조(의결 정족수)** 학생교육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의결 정족수)** 학생교육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수정)
제25조 (추가)		**제25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추가)** 1.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가. 해당 사안과 관련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나.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된 사람인 경우 2.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호 각 목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7조 (신설)		**제27조(강제학습 금지)**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과 후 학습, 야간 및 휴일 자율학습에서 학생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신설)
제29조 2호 나목 (수정)	**제23조(훈계, 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② 교사는 학생의 행동 성찰 및 수정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훈계, 훈육의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제29조(훈계, 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2. 교사는 학생의 행동 성찰 및 수정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목과(수정) 같은 훈계, 훈육의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분리 조치에 관한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

제30조 7호 가 나 다목 (수정)	**제24조(소지품 검사)** ⑦ 소지품 검사가 가능한 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2조 제1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 2. 제12조 제2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 3. 제12조 제7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	**제30조(소지품 검사)** 7. 소지품 검사가 가능한 상황은 다음 각 목과(수정) 같다. 가. '제14조 제1호 가목'(수정)에서 예시한 도구를 ~ 나. '제14조 제1호 나목'(수정)에서 예시한 도구를 ~ 다. '제14조 제1호 사목·자목'(수정)에서 예시한 도구를 ~
제31조 2호 3호 (수정 및 추가)	**제25조(전자기기 사용 지도)** ② 제15조 제1항에서 예시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활동 시간 동안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	**제31조(전자기기 사용 지도)** 2. 제17조 제1호(수정)에서 예시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활동 시간 동안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하여 보관할 수 있다. 압수한 물품은 '학생으로부터 분리·보관할 수 있는 물품의 보관 방법(별첨2)'에 따른다.(추가) 3. 제2호(수정)에 따라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
제33조 1 2 3 4 호 (수정)	**제27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① 학교내 봉사 : 5시간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② 사회봉사 : 3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③ 특별교육이수 : 3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④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제33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1. 학교내 봉사 : 20(수정)시간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2. 사회봉사 : 7(수정)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3. 특별교육이수 : 5일 이상 10(수정)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4.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미인정(수정)결석으로 처리한다.

제34조 1 2 5 6 7호 (수정 및 추가)	**제28조(징계의 방법)** ~ 다음 각 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① 학교내 봉사 : ~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과후에 실시한다. ② 사회봉사 : ~ 가중 처벌한다. ⑤ 퇴학처분 : ~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할 때에는 1주 ~ 2주의 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으며, ~	**제34조(징계의 방법)**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수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 봉사 : ~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여 실시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를 통보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수정 및 추가) 2. 사회봉사 : ~ 가중 처벌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를 통보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수정 및 추가) 5. 퇴학처분 : ~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할 때에는 일정한(1주 ~ 2주 정도)(수정) 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으며,~ 6. 학생의 징계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추가) 가. 징계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나. 징계 행위를 한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다. 징계 행위를 한 학생과 피해를 입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 정도 라. 징계 학생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임신 여부, 장애 여부, 노약자 여부 및 그 정도 마. 징계 행위를 한 학생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7. 징계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며, 가급적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추가)
제37조 2호 3호 (수정)	**제31조(퇴학처분에 대한 징계 재심 청구)** ②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청구사항을 지정 서식에 작성하여 ~	**제37조(퇴학처분에 대한 징계 재심 청구)** 2. ~ 다음 각 목(수정)의 사항을 적어 3.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청구사항을 전라북도교육청(수정) 지정 서식에 작성하여 ~

제40조 (수정)	**제34조(징계의 기준)** 학교생활규정(전북교육2019-193) 재·개정 방향이 제시한 관련 근거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학교에서 전북 학생인권 조례 19조 2항의 절차를 거쳐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0조(징계의 기준)** 학교생활규정 예시안(전북교육인권센터 2023-4704)(수정) 재·개정 방향이 제시한 관련 근거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학교에서 전북 학생인권 조례 19조 2항의 절차를 거쳐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1조 3 6 7호 (수정 및 추가)	**제35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생활지도 업무 담당자),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한다. 학생위원은 전체의 1/3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⑤ ~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3. 학생 . 교원 . 학부모 대표 선출은 각 상황과 여건에 맞게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발한다. 다만, 학생위원은 전체의 4/1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수정 및 추가) 6. ~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전문가 등(추가)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7. 위원회는 규정안을 심의함에 있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추가)
제43호 2호 (수정)	**제37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②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3조(검토(수정) 및 의견수렴)** 2. 제1호(수정)에 의한 검토(수정)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4조 1호 (수정)	**제38조(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한다.	**제44조(심의 및 결정)** 1. 위원회는 제·(수정)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한다.
부칙 제1조 제2조 (수정 및 삭제)	**제1조** 이 규정은 2019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3조** 별첨3, 별첨4는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2023.09.01.)를 반영하여 절차에 따른 회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거쳐 추가한 사항이며, 2023년 10월 31일 이전 학생생활규정이 재정립되는 시기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제1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수정) **제2조** 이 규정은 202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수정)

【별첨 1】(수정)		별표 참조
【별첨 2】(수정)		별표 참조
【별첨 3】(수정 및 추가)		별표 참조
【별첨 4】(수정 및 추가)		별표 참조
【별첨 5】(수정 및 추가)		별표 참조

별첨1.

[학생 분리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제29조 관련)[1](수정)]

생활 지도	요건		분리 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가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1층 교무실, 교장실, 상담실 등 학교의 장이 지정한 교내 별도의 장소(수정) (수업 종료 시 까지)	◦교사가 학교의 장에게 학생 인계 요청(수정) ◦학교의 장 책임하에 관리자가 지정 장소로 이동 및 지도(수정) ◦단, 관리자 부재 시 교직원이 협력하여 학생 분리 및 지도(수정)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가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분) 보장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1층 교무실, 교장실, 상담실 등 학교의 장이 지정한 교내 별도의 장소(60분 이내)(수정)	학교의 장이(수정)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기타	- 지각은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08:20까지 교실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 결과는 교사가 교실에 들어와 출석을 확인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5분 경과 후 수업 참여 - 분리 시간은 수업 종료 시까지(단, 학생이 수업 종료 전이라도 수업에 참여할 준비가 된 경우 학급으로 복귀 가능 등 상황에 맞게 할 수 있음)(추가) -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학교 여건에 따라 시간대별로 교직원이 분담하는 방식 등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유의점	- 고의적으로 교실 밖으로 분리 조치 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리 장소 선정 시 학생들의 선호 장소는 가급적 제외하며, 분리 공간의 환경과 안전(시설, 위험도구 등) 등을 확인한다.(추가) - 필요 이상의 지나친 분리는 자제하며, 분리가 실시되는 동안 학생만 특정 공간에 방치하지 않는다.(추가)				

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28호) 제12조제6항의 제3호 및 제4호에 대한 학칙 규정(추가)

별첨2.

[학생으로부터 분리·보관할 수 있는 물품의 보관 방법(제30조, 제31조 관련)[2]](수정)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 방법
1	수업시간에 수업과 무관한 것을(수정)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시간	교실 지정 장소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 즉시 되돌려줌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수정)	3일	1층 교무실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일지관리는 교무실무사)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수정)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본교 14조, 17조)(수정)			

*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 제14조(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학생 개인 및 학교,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7조(전자기기 사용) 1. 교육활동 과정(조•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학교행사, 체험활동)에서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교사가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3](수정)

2)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28호) 제12조 제9항에 대한 학칙 규정(추가)
3) 세부 항목에 관한 사항은 제14조 참조(수정)

별첨3.

[생활지도 기준안(제40조 관련)](수정 및 추가)

항	내용	징계의 기준					
		주의	학교 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이수	출석 정지	퇴학 처분
1	교원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가한 학생		○	○	○	○	○
2	언행이 불손하고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	○	○			
3	교원에게 불손한 언행을 하거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학생	○	○	○	○	○	○
4	언행이 불량하여 외부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	○	○		
5	훈계 . 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행동 수정의 노력이 없는 학생	○	○	○	○		
6	도박(사이버).흡연.음주.금지 약물을 상습적으로 한 학생		○	○	○	○	
7	본드 대마초 환각제 및 마약류를 흡입하거나 복용한 학생				○	○	○
8	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을 상습적으로 소지하거나 사용한 학생(흡연.음주 관련 용품 소지는 흡연자와 음주자로 간주)	○	○	○	○	○	○
9	유해 매체물을 교내로 반입 . 유포하거나 상습적으로 사용한 학생	○	○	○	○		
10	타인의 금품(귀중품)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학생		○	○	○	○	○
11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상습적으로 출입하는 학생	○	○	○			
12	학교장의 허락없이 대외 행사에 출품 . 출연 또는 참가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13	불량 서클을 조직 . 운영하거나 가입하여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	○	○
14	인장, 제증명, 공문서를 위조 . 변조 . 사용하거나 나쁜 목적으로 대여한 학생	○	○	○	○	○	○
15	학교의 허락 없이 집단행동을 모의하거나 선동한 학생	○	○	○	○	○	
16	공공시설물이나 비품을 절취하거나 고의로 파손한 학생		○	○	○		
17	수업 준비 또는 태도가 불량한 학생	○	○				
18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상습적으로 방해한 학생	○	○	○	○		
19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을 거부한 학생		○	○	○		
20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동조한 학생		○	○	○	○	○

항	내용	징계의 기준					
		주의	학교 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이수	출석 정지	퇴학 처분
21	시험문제를 누설 또는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	○	○	○	○
22	이성 또는 동성교제로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		
23	상습적으로 수업시간에 휴대폰, 전자기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	○	○	○	○		
24	인터넷 또는 SNS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이나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학생	○	○	○	○		
25	인터넷에서 불건전한 사이트 운영,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 불법적인 행동을 한 학생	○	○	○	○		
26	미인정 지각.결과.조퇴·결석을 상습적으로 한 학생의 담임교사 요청 시	○	○				
27	가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		
28	미인정결석이 10일 이상인 학생의 담임교사 요청 시	○	○				
29	미인정결석이 20일 이상인 학생의 담임교사 요청 시	○	○	○	○		
30	미인정결석이 출석일수 1/3을 초과한 학생						○
31	경찰에 연행되어 훈방 또는 구류 처분을 받은 학생		○	○	○	○	○
32	경찰에 연행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학생						○
33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를 거부한 학생		○	○	○	○	○
34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
35	재학 기간 중 3회 이상 동일 징계를 받을 때는 가중 처벌한다.		○	○	○	○	○
36	타학생에게 혐오감을 주는 신체 문신	○	○	○	○	○	○
37	학교용품 및 시설물 절취 사안 발생 시	○	○	○	○	○	○
38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 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	○	○	○	○	○
39	**생활지도 기준안에 명시된 경우라 할지라도 사안에 따라 학생생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가감할 수 있다.**	○	○	○	○	○	○

별첨4.

[금연 및 흡연 예방에 관한 규정(제15조 관련)](수정및추가)

내용
○ 생활지도기준안 8항의 위반으로 선도 처분을 적용한다. ○ 학교 내 교정에서 적발 시 2회 적발로 간주하며, 학교 건물 내에서 적발 시 3회 적발로 간주한다. ○ 적발 시마다 학부모에게 통보한다. ※ 적발 횟수와 관계 없이, 교육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행동 수정의 노력이 없는 학생의 경우 인성인권부장의 제청으로 생활교육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위반에 따른 징계
- 1회 적발 시 주의 처분(학부모 통보) - 2회 적발 시 교내봉사활동 1시간 이수(학부모 통보) - 3회 적발 시 교내봉사활동 3시간 이수(부모에게 공지 후 학교 소환) - 4회 적발 시 사회봉사활동 3시간 이수(학부모 통보) - 5회 적발 시 사회봉사활동 5시간 이수(학부모 통보) - 6회 적발 시 금연학교 입교 및 특별교육 5일 이수(부모에게 공지 후 학교 소환) - 7회 적발 시 특별교육 10일 이수(학부모 통보) - 8회 적발 시 출석정지 3일(부모에게 공지 후 학교 소환) - 9회 적발 시 출석정지 5일(학부모 통보) - 10회 적발 시 출석정지 10일(학부모 통보) - 11회 적발 시 출석정지 10일(부모에게 공지 후 학교 소환) - 12회 적발 시 생활교육위원회 퇴학 처분 심의 대상(학부모 통보)

별첨5.

[복장 및 두발에 관한 규정(제15조 관련)](수정 및 추가)

구분		내용
복장	동복	○ 교복(재킷, 조끼, 와이셔츠, 하의)을 갖춰 입는다. ○ 혹한기에는 교복 위에 패딩이나 기타 외투를 착용할 수 있다.
	춘추복	○ 춘추복에 맞게 교복(조끼, 와이셔츠, 하의)을 갖춰 입는다.
	하복	○ 교복(생활복 상의, 하의)을 갖춰 입는다.
	등하교시에는 교복과 생활복만 허용되며, 체육복 등교는 허용되지 않는다.	
두발	○ 두발의 경우 검은색 계통만 허용되며, 검은색 계통 이외의 염색은 허용되지 않는다. ○ 어깨를 넘어가는 장발은 허용되지 않는다. ○ 두발에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부모와 담임의 요청에 의해 예외를 둘 수 있다.(예 - 머리의 흉터 등)	
신발	실외	○ 운동화와 단화 등 신발 종류만 허용되며, 슬리퍼 등하교는 허용되지 않는다.(크록스, 샌들 종류는 슬리퍼에 포함된다.)
	실내	○ 슬리퍼만 허용된다.
	우천시에 한하여 슬리퍼 등하교를 허용한다.	

위반에 따른 징계
- 1회 적발 시 주의 처분 - 2회 적발 시 주의 처분 - 3회 적발 시 주의 처분(학부모 통보) - 4회 적발 시 교내봉사활동 1시간(학부모 공지 후 학교 소환) - 5회 적발 시 교내봉사활동 3시간(학부모 통보) - 6회 적발 시 교내봉사활동 5시간(학부모 통보) - 7회 적발 시 사회봉사활동 3시간(학부모 공지 후 학교 소환) - 8회 적발 시 사회봉사활동 5시간(학부모 통보) - 9회 적발 시 사회봉사활동 10시간(학부모 통보) - 10회 적발 시 사회봉사활동 15시간(학부모 통보) - 11회 적발 시 특별교육 5일 이수(학부모 공지 후 학교 소환) - 12회 적발 시 특별교육 7일 이수(학부모 통보) - 13회 적발 시 출석정지 3일(학부모 공지 후 학교 소환) - 14회 적발 시 출석정지 5일(학부모 통보) - 15회 적발 시 출석정지 10일(학부모 통보) - 16회 적발 시 출석정지 10일(학부모 공지 후 학교 소환) - 17회 적발 시 생활교육위원회 퇴학 처분 심의 대상(학부모 통보) ※ 적발 횟수와 관계 없이, 교육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행동 수정의 노력이 없는 학생의 경우 인성인권부장의 제청으로 생활교육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